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2호
의결 년월일	2010. 9. 10 (제164회)

제안년월일 : 2010. 8. 24.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부천시의회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나.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의 총일수는 55일 이내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다.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9월 1일로 정함(안 제4조제1항).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4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55일 이내로 하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1일에 집회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u>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u></p>	<p>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u>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u></p>
<p>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42일 이내로 하되, 제1차 정례회는 10일 이내, 제2차 정례회는 32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42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p> <p>② 임시회의 회기는 48일 이내로 하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p>	<p>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4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p> <p>② 임시회의 회기는 55일 이내로 하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p>
<p>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하여 정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1일에 집회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7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